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11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지방보조금법) 제정에 따른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상위법 변경으로 관련 조문 정비

☐ 주요내용

○ 상위 법 및 조항을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조항에 맞추어 정비
(안 제1조, 안 제5조제2항 에서 제3항 까지, 안 제2장 제목, 안 제6조제1항, 안 제7조제1항, 안 제14조제1항, 안 제19조, 안 제28조제1항에서 제2항, 안 제29조제1항)

○ 조문 명확화
(안 제2조제1호, 안 제4조제4호, 안제6조제2항)

☐ 개정조례안 : 붙임1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☐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☐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☐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1. 4. 8. ~ 2021. 4. 28. (20일간)

☐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5
○ 방침결정문 : 붙임6

〈 붙임 1 〉

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” 을 “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교부하는 자금(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” 를 “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” 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7조” 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” 을 “보조금” 으로, “없고, 그” 를 “없는 경우로서” 로, “있는 경우로서” 를 “있고,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법 제32조의2제2항” 을 “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6조제2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 를 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 를 “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의3” 을 “법 제26조” 로,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 를 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성이” 를 “성별이” 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2조의2제3항” 을 “법 제26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의2제4항” 을 “법 제7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19조 단서 중 “법 제17조제2항” 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의9제1항” 을 “법 제21조제1항” 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법 제32조의9제3항”을 “법 제2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법 제60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안산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를 “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② 안산시 식품·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를 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이 석 종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산팀장 장 선 자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박 선 혜 (행정 2805)

〈 붙임 2 〉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.
1. "지방보조금"이란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,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(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	1. ----------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4조(보조대상 사업) -----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----------.
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4. 보조금---------- ---------- ----- 없는 경우로서 ------- ---------- 있고,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----------
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(생 략)	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	② ---------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2항---- ----------.
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른다.	<삭 제>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,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----------.
제2장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	제2장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제6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6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------ 법 제26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-- ----------.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 성별이 ----------

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법 제26조제2항-----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	제1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① --- 법 제7조제2항 ----------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교부방법)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,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. 다만,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	제19조(교부방법) ----------. --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 ----------.
제28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	제28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) ① --------- 법 제21조

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,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1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 -- 법 제21조제3항----------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, 성과 평가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	제29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 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